

청주지방법원 2023. 5. 31 선고 2021가합556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청구]

전 문

원고A문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우성

피고(선정당사자)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베이스스 담당변호사 이호철, 정일연

2. 망 C의 소송수계인 D

피고3. E

4. F

5. G

6. H

7. I

8. J

9. K

10. L

11. M

12. N

13. O

14. P

15. Q

16. R

17. S

18. T

19. U

20. V

21. W

22. X

23. Y

24. Z

25. AA

26. AB

27. AC

28. AD

29. 망 C의 소송수계인 AE

변론 종결 2023. 4. 26.

판결 선고 2023. 5. 3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AF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1.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5번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망 C의 소송수계인(이하 '피고'라 한다) AG, AE, AH, AI, AJ, D는 각 1/18 지분, 피고 AK은 각 3/27, 피고 B, AL, AM는 각 2/27 지분, 피고 E,

은 각 6/69 지분, 피고 F, G, H은 각 1/69 지분, 피고 J, K은 각 4/69 지분에 관하여,

2. 별지 목록 순번 6 내지 8번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AG, AE, AH, AI, AJ, D는 각 1/18 지분, 피고 L, O은 각 1,053/15,795 지분, 피고 AK은 각 3,159/142,155 지분, 피고 B, AL, AM는 각 2,106/142,155 지분, 피고 M, N은 각 1,053/31,590 지분, 피고 P은 351/15,795 지분, 피고 Q, R는 각 234/15,795 지분, 피고 S은 각 78/15,795 지분, 피고 T, U, V는 각 52/15,795 지분, 피고 E, 피고 I은 각 6/69 지분, 피고 F, G, H은 각 1/69 지분, 피고 J, K은 각 4/69 지분에 관하여,

3. 별지 목록 순번 9, 10번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L, O은 각 1,053/15,795 지분, 피고 AK은 각 3,159/142,155 지분, 피고 B, AL, AM는 각 2,106/142,155 지분, 피고 M, N은 각 1,053/31,590 지분, 피고 P은 각 351/15,795 지분, 피고 Q, R는 각 234/15,795 지분, 피고 S은 각 78/15,795 지분, 피고 T, U, V는 각 52/15,795 지분, 피고 E, I은 각 6/69 지분, 피고 F, G, H은 각 1/69 지분, 피고 J, K은 각 4/69 지분에 관하여,

4. 별지 목록 순번 11, 12번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AG, AE, AH, AI, AJ, D는 각 1/24 지분, 피고 AC, AD은 각 1/8 지분, 피고 E, I은 각 6/92 지분, 피고 F, G, H은 각 1/92 지분, 피고 J, K은 각 4/92 지분, 피고 L, O은 각 1,053/21,060 지분, 피고 AK은 3,159/189,540 지분, 피고 B, AL, AM는 각 2,103/189,540지분, 피고 M, N은 각 1,053/42,120 지분, 피고 P은 각 351/21,060 지분, 피고 Q, R는 각 234/21,060 지분, 피고 S은 각 78/21,060 지분, 피고 T, U, V는 각 52/21,060 지분에 관하여,

5. 별지 목록 순번 13번 기재 부동산 중 피고 AG, AE, AH, AI, AJ, D는 각 1/12 지분, 피고 AK은 3/18, 피고 B, AL, AM는 각 2/18 지분에 관하여,

6. 별지 목록 순번 14번 기재 부동산 중 피고 AG, AE, AH, AI, AJ, D는 각 1/24 지분, 피고 W는 3/52 지분, 피고 X, Y, Z, AA, AB는 각 2/52 지분, 피고 E, I은 각 6/92 지분, 피고 F, G, H은 각 1/92 지분, 피고 J, K은 각 4/92 지분, 피고 P은 27/324 지분, 피고 Q, R는 각 18/324 지분, 피고 S은 6/324 지분, 피고 T, U, V는 각 4/324 지분에 관하여,

피고 AG, AE, AH, AI, AJ, D, AK, B, AL, AM, E, F, G, H, K, M, N, Q, R, AC, AD, W, Y, Z, AA, AB는 각 2010. 10. 29.자, 피고 S은 2010. 10. 30.자, 피고 L, O은 각 2010. 11. 1.자, 피고 P, X은

각 2010. 11. 2.자, 피고 J은 2010. 12. 31.자, 피고 T, U, V는 각 2011. 1. 10.자, 피고 I은 2011. 3. 7.자 각 명의신탁해지(지목변경, 농지법의 개정, 기타 종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사실의 발생을 정지조건으로 함)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 항변의 요지

1) 피고 AK, AL, AM, B, AG, AH, AI, AJ, D 가) 원고는 이전 소송에서 'AN중친회'(대표자 AF)라는 명칭으로 이 사건 피고들이나 피고들의 피상속인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위 소가 각하되자(청주지방법원 2007가합283호), 그 후 'A문중'(대표자 AO)으로 그 명칭을 바꾸어 이 사건 피고들이나 피고들의 피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던 사정이 존재하는바(위 법원 2010가합5868호), 그 당사자의 실체가 불분명하다.

나) 이 사건 소제기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진 원고의 2021. 11. 9.자 종종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는 2013. 11. 9. 개최된 원고의 종종총회(이하 '2013. 11. 9.자 총회'라 한다)에서 개정된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에 따라 개최된 것인데, 2013. 11. 9.자 총회결의에는 그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그 결의에 따라 개정된 이 사건 규약은 무효이므로, 위 규약에 따라 이 사건 소제기를 위하여 개최되었던 이 사건 총회결의도 무효이다.

다) 원고는 2022. 10. 29. 개최된 원고의 종종총회(이하 '2022. 10. 29.자 총회'라 한다)를 통하여, 2013. 11. 9.자 총회결의 사항이나 이 사건 총회결의 사항에 관하여 추인하였다고 주장하나, 2022. 10. 29.자 총회도 그 소집절차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다.

나) 피고 I, J, AP, E, AQ, H, AR, K, AS, AT, AU, F, AV, G, AW, AX, AY, AZ, BA, BB 원고는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사람들만으로 구성된 단체로, 본래 의미의 종종이라고 할 수 없고,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불과하다.

나. 이 사건 소제기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다만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의하여 종중원이 매년 1회씩 일정한 일시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회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따로 소집통지나 의결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종중총회의 결의를 무효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43862 판결, 1991. 8. 13. 선고 91다1189 판결, 1994. 9. 30. 선고 93다2770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종중 유사단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98843 판결 등 참조).

나)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총회의 결의라도 후에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면 이는 처음부터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2729 판결,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5383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E, F, G, H, I, J, K, L,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망 C(피고 D, AG, AH, AI, AJ, AE의 피상속인이다)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총 38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고(청주지방법원 2010가합5868호), 201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별다른 소집절차 없이 2013. 11. 9. 충북 진천군 BC에서 2013. 11. 9.자 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DOCUMENT: 2013. 11. 9.자 종중총회 회의록(이미지 생략)

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농지여서 종중인 원고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자, 원고는 다시 별다른 소집절차 없이 2021. 11. 6.(토요일) 12:00 충북 진천군 BC에서 이 사건 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총회에서는 ①이 사건 규약의 일부 개정, ②새로운 대표자로 회장 AF 선출 및 부회장, 총무, 감사 등 선출, ③AF에게 종중 소유 부동산을 BD에게 매각하는 행위와 관련된 일체의 권한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절차 이행을 위한 소제기 권한 위임 등의 안건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졌다(참석인원 총 11명).

라) 그 후 원고는 별다른 소집절차 없이 2022. 10. 29.(토요일) 12:00 충북 진천군 BC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총회에서는 ①종중규약 개정안 심의 의결, ②기존 이사회 결의사항과 기존 임시총회 및 정기총회의 결의사항 추인 및 임원선출, ③종중재산의 보전 및 처분과 관련한 기존 결의사항과 종사에 관련된 제반 소송 등에 관한 기존 결의상의 추인 등의 안건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졌다(참석인원 총 18명).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6 내지 7, 11, 12, 14, 15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가) 2013. 11. 9.자 총회결의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제기는 이 사건 총회결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졌고, 이 사건 총회결의는 2013. 11. 9.자 총회결의를 통하여 개정된 이 사건 규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먼저 2013. 11. 9.자 총회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법리,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종중 내지 종중유사단체인지 여부와 관계없이¹⁾, 2013. 11. 9.자 총회결의는 부적법하여 그 효력이 없고 따라서 위 총회결의를 통하여 개정된 이 사건 규약도 무효로 판단된다.

(1) 종중의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매년 일정한 날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종중원들이 집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종중회의의 소집절차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갑 제3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매년 음력 10. 15. 또는 위 일시에 가까운 공휴일과 그 다음날', '매년 음력 10. 15. 전후' 또는 '음력 10. 15.에 가까운 토요일'에 중시조인 BE를 비롯한 선조들에 대한 시제를 올려왔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규약이 개정되기 전에는 원고의 규약에 특정일(예컨대 이 사건 규약 제16조의 '매년 음력 10월 첫째 주 토요일 14시')이 정기총회일로 지정되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매년

음력 10. 15. 또는 위 일시에 가까운 공휴일과 그 다음날', '매년 음력 10. 15. 전후' 또는 '음력 10. 15.에 가까운 토요일' 정도로는 원고의 임원 등 원고의 운영에 깊이 개입하는 종중원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종중원들로서는 정기총회의 정확한 날짜를 알기 어려운바, 2013. 11. 9.자 총회 개최 무렵에 원고의 정기총회 개최일이 특정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나아가 '매년 음력 10. 15. 또는 위 일시에 가까운 공휴일과 그 다음날', '매년 음력 10. 15. 전후' 또는 '음력 10. 15.에 가까운 토요일' 중 일시가 가장 특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음력 10. 15.에 가까운 토요일'을 2013. 11.경 원고의 정기총회일로 보더라도, 음력 2013. 10. 15.에 가장 가까운 토요일은 2013. 11. 16.(음력 2013. 10. 14.)인바, 2013. 11. 9.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원고가 2013. 11. 9.에 종중총회를 개최하려면, 그 전에 미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야 하나, 원고가 미리 소집 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하였다거나,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심지어 원고는 소집 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에 대한 명부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4) 더구나 2013. 11. 9.자 총회 참석자 및 임원 명단을 보더라도 원고의 대동세보(을 제4호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의 성명이 다수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2) 3)}, 2013. 11. 9.자 총회와 관련하여 그 참석자들이나 임원들이 원고 소속 종중원이 맞는지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원고는 2013. 11. 9.자 총회 참석자 및 임원 명단에서 원고의 대동세보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의 성명이 다수 기재되어 있다는 일부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총회결의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설령 2013. 11. 9.자 총회결의가 부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개최된 이 사건 총회결의를 통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었으므로 2013. 11. 9.자 총회결의 및 이 사건 총회결의가 모두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법리,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총회결의도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1) 이 사건 총회는 2021. 11. 6.(토요일, 음력 2021. 10. 2.)에 개최되었는데, 이는 무효인 2013. 11. 9.자 총회결의를 통하여 개정된 이 사건 규약 제16조(정기총회는 별도의 소집통지 없이 BF의 시제일인 매년 음력 10월 첫째 주 토요일 14시에 충북 진천군 BC 소재 BF의 선영에서 개최한다)에 따른 것이다.

(2)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총회는 14:00가 아닌 12:00에 개최되었는데, 설령 이 사건 규약이 유효하더라도 이 사건 총회는 위 규약에 규정된 개최 시각이 아닌 다른 시각에 개최된 것인바, 전국 각지에 흩어져있는 종중원들의 총회 장소까지의 이동시간, 이 사건 총회결의 내용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정기총회의 개최 시각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을 가벼운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3) 더구나 무효인 2013. 11. 9.자 총회결의의 내용이 위 결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다른 종중원들에게 통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총회의 개최에 관하여도 별다른 소집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2013. 11. 9.자 총회결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다른 대부분의 종중원들이 이 사건 총회의 개최일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총회의 개최에 관하여도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였어야 함에도, 그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2022. 10. 29.자 총회결의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3. 11. 9.(토요일, 음력 2022. 10. 5.)자 총회결의나 이 사건 총회결의가 부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이루어진 2022. 10. 29.자 총회결의를 통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법리,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2022. 10. 29.자 총회 개최의 근거가 되는 2013. 11. 9.자 총회나 이 사건 총회를 통하여 결의된 각 규약은 무효로 판단되는 점, ② 2013. 11. 9.자 총회나 이 사건 총회와 마찬가지로, 원고 소속 대다수 종중원들이 2022. 10. 29.자 총회 개최 사실에 관하여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③ 따라서 원고는 2022. 10. 29.자 총회의 개최에 관하여도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였어야 함에도, 그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22. 10. 29.자 총회결의도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2022. 10. 29.자 총회결의를 통하여 2013. 11. 9.자 총회결의나 이 사건 총회결의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제기는 부적법하게 개정된 이 사건 규약에 따라 소집된 이 사건 총회결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총회결의가 2022. 10. 29.자 총회결의에 따라 추인되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는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적법한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설령 이 사건 소제기에 관한 이 사건 총회결의가 적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청주지방법원 2010가합5868호 판결로 원고의 피고들이나 피고들의 피상속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된 상태에서, 법률적인 문제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곤란해졌다는 이유로 다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과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절차의 이행청구를 구하는 형태의 소가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 이지현

판사성찬용

판사서보람

별지

1) 위 청주지방법원 2010가합5868 판결에서는 원고를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 판단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판결 내용에 기판력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인지, 종중유사단체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앞서 든 법리에 의하면 원고가 종중인지, 종중유사단체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2013. 11. 9.자 총회결의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참석자: BG, BH, BI, BJ, BK, BL, BM, BN, BO, AM, D, BP, BQ, BR, BS, BT, BU, BV, BW, AO

3) 임원: AO, BX, BW